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59호 2020. 3. 19.(목)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281호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1
남해군 공고 제2020-325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2
남해군 공고 제2020-329호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남해군 공고 제2020-333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남해군 공고 제2020-339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공시송달 공고	19
남해군 공고 제2020-340호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공시송달 공고	18
남해군 공고 제2020-351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	20
남해군 공고 제2020-364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남해군 공고 제2020-365호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장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8
남해군 공고 제2020-366호	남해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 개최 공고 ……	37
남해군 공고 제2020-367호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장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9
남해군 공고 제2020-368호	공인 등록 공고 ……	50
남해군 공고 제2020-37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남해군 공고 제2020-37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1
남해군 공고 제2020-37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남해군 공고 제2020-378호	공인 등록 공고 ……	78
남해군 공고 제2020-380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79
남해군 공고 제2020-390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남해군 공고 제2020-391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86
남해군 공고 제2020-400호	동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92
남해군 공고 제2020-407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98

회 략									
-----	--	--	--	--	--	--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281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224, 1227, 산231-4, 산341-6, 산349-1, 산349-2, 산356-3, 산356-6, 산375, 산376-1, 산389번지 일원 (조도, 호도)

나. 분묘기수 : 20기

2. 개장 사유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구간 내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남해추모누리 봉안당(경남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번지)

4.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7. 신고(연락처) : 남해군 문화관광과(055-860-8613, 860-8618)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25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연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00305호	마을어업	패류/기타 해면해조류	삼동면 영지지선	1,878,000	2020.3.10 ~ 2030.3.0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영지어촌계	2020.3.3	재개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00081호	마을어업	패류/기타 해면해조류	설천면 문항지선	1,878,000	2000.03.10 ~ 2020.03.09	남해군 삼동	영지어촌계	

남해군 공고 제2020 - 329호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이 조례 규정 사항과 부합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무의 근거 조항 수정
 -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의 8 ⇒ 법 제24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의 2 ⇒ 법 제 30조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법 제37조 및 제39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860-3700, e-mail : cho710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 2” 를 “법 제3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p>1. <u>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2. <u>법 제18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u></p> <p>3. 4. 삭제</p> <p>5. <u>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따른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u></p>	<p>제2조(권한의 위임) ----- ----- -----.</p> <p>1. 「<u>주민등록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u>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u></p> <p>2. <u>법 제30조</u>----- -----</p> <p>5. <u>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u></p>

남해군 공고 제2020 - 333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 규칙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을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함
- 본청의 직속기관 업무대행·징수관·재무관·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재정사항의 합의에 대하여 전결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5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e-mail) : pj3054@korea.kr

2)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3) 팩스 : 055-860-370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전화 : 055-860-3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의 대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 또는 전문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 정보, 소방, 그 밖의 공사의 입찰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및 5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부과 취소와 감액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 원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 원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백만 원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의 전결 기준은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입 관	행정복지국장	-	-
징 수 관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복지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행정복지국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팀장	의사업무 팀장	지출업무담당 팀장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관리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경리담당 팀장	-	각 담당관·과 경리담당 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출 납 외 현 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	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회 계 책 임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분 임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경리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팀장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경리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경리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원	경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현 금 출 납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읍·면사무소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

대상경비	합의 한도			비고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경리팀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추정금액 10억 이상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추정금액 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추정금액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백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 기타 경비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20 - 339호

공시송달 공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9.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255-1번지 등 8필지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20. 3. 9. ~ 2020. 3. 23.(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20. 3. 2. ~ 2020. 4. 30.(2개월간)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055-860-3295)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 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상주면 양아리	1255	1255-1	임야	109	51		정성호				
2	상주면 양아리	1257	1257-1	전	1,157	568		정성호				
3	상주면 양아리	1256	1256-1	전	1,101	796	상주면 양아리 1317	정차진				
4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1	임야	14,678	183	상주면 양아리 1317	정차진				
5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2	임야	14,678	52	상주면 양아리 1317	정차진				
6	상주면 양아리	1226	1266-1	전	122	14	이동면 양아리 1323	정달수				
7	상주면 양아리	1272	1272-1	전	225	54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 동2가 444	정군세				
8	상주면 양아리	산270	산270-1	임야	3,471	676	이동면 양아리 26	김도환				
							이동면 양아리 20	김세홍				
							이동면 양아리 25	김송조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2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40호

공시송달 공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9.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05-2 등 2필지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20. 3. 9. ~ 2020. 3. 23.(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20. 2. 3. ~ 2020. 3. 31.(2개월간)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055-860-3295)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 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남해읍 아산리	205-2		도	89	89	남해읍 북변리 484	강희규				
2	남해읍 아산리	210		도	102	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원부미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음
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295)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51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38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상주 금포	120900	2020.03.10 2030.03.09 (10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495번길 54	하수희 외 1명(김기택)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60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상주 금포	120,900	2010.03.10. 2020.03.09. (10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495번길 54	하수희 외 1명(김기택)	

※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20- 364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가. 수도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유명무실한 규정 삭제 및 신설
- 나. 시설분담금 제14조 [별표1] ‘98년 이후 경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59% 인상

3. 주요내용

- 가. 시설분담금 인상(안제14조 별표1)
- 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조항 신설(안제4조제1항제4호)
- 다.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14의2)
 -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제14조의3)), [별표5]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23, 팩스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055-860-3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분담금 (제14조 관련)

별표1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계량기 관 지름별(mm)</th> <th>분담금액(천원)</th> </tr> </thead> <tbody> <tr><td>13</td><td>80</td></tr> <tr><td>20</td><td>100</td></tr> <tr><td>25</td><td>180</td></tr> <tr><td>32</td><td>230</td></tr> <tr><td>40</td><td>260</td></tr> <tr><td>50</td><td>640</td></tr> <tr><td>75</td><td>1,200</td></tr> <tr><td>100</td><td>4,500</td></tr> <tr><td>150</td><td>9,000</td></tr> <tr><td>200</td><td>15,000</td></tr> </tbody> </table>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담금액(천원)	13	80	20	100	25	180	32	230	40	260	50	640	75	1,200	100	4,500	150	9,000	200	15,000	<p>[별표]</p> <p>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계량기 관 지름별(mm)</th> <th>분담금액(천원)</th> </tr> </thead> <tbody> <tr><td>13</td><td>110</td></tr> <tr><td>20</td><td>308</td></tr> <tr><td>25</td><td>496</td></tr> <tr><td>32</td><td>882</td></tr> <tr><td>40</td><td>1,489</td></tr> <tr><td>50</td><td>2,283</td></tr> <tr><td>75</td><td>5,538</td></tr> <tr><td>100</td><td>9,443</td></tr> <tr><td>150</td><td>20,574</td></tr> <tr><td>200</td><td>29,218</td></tr> </tbody> </table>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담금액(천원)	13	110	20	308	25	496	32	882	40	1,489	50	2,283	75	5,538	100	9,443	150	20,574	200	29,218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담금액(천원)																																													
13	80																																													
20	100																																													
25	180																																													
32	230																																													
40	260																																													
50	640																																													
75	1,200																																													
100	4,500																																													
150	9,000																																													
200	15,000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담금액(천원)																																													
13	110																																													
20	308																																													
25	496																																													
32	882																																													
40	1,489																																													
50	2,283																																													
75	5,538																																													
100	9,443																																													
150	20,574																																													
200	29,218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4.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14조의3(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급수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군수에게 공사개요·도면 등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급수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개요와 조례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그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원할 경우 최대 네 차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

<삭 제>

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담금액(천원)
13	80
20	100
25	180
32	230
40	260
50	640
75	1,200
100	4,500
150	9,000
200	15,000

[별표 5]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14조의3 제1항 관련)
(생략)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

계량기 관 지름별(mm)	분담금액(천원)
13	110
20	308
25	496
32	882
40	1,489
50	2,283
75	5,538
100	9,443
150	20,574
200	29,218

[별표 5]<삭제>

남해군 공고 제2020 - 365호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다수의 원인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바. 공사시행자, 다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23, 팩스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860-3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해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파손 및 공사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및 이로 인해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시설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에게 파손원인자 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개발행위자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시설 설치비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이하 “누수 및 퇴수” 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량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금
9. 홍보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정하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부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하여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에 따라 산정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만 산정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산정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산정,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먼저 부과·징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책임이 있는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경우에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행위로 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남해군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순자산”이란 남해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남해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른다.
3. “시설용량”이란 남해군의 자체 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의 광역배분계획량의 합을 말한다.
4. “수돗물사용량”이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6. 단위사업비는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 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7.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남해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순자산과 시설용량을 재 적용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times 3600$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m^3/hr)
C = 유량계수($Ca \times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 $1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 연장 (m)
---------------------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66호

남해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 개최 공고

남해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평가서(초안)게재는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가. 계 획 명 칭 : 남해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 나. 위 치 및 규 모 : 경상남도 남해군 관내 농어촌도로 187개 노선(총연장 436.5km)
 - 다. 내 용 : 남해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검토
 - 위치 및 규모 : 경상남도 남해군 관내

○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증 감	
	노선수	연 장 (km)	개 설 (km)	미개설 (km)	노선수	연 장 (km)	개 설 (km)	미개설 (km)	노선수	연 장 (km)
합 계	186	506.8	253.8	253.0	187	436.5	124.2	312.3	▲1	▼70.3
남해읍	16	46.0	36.7	9.3	15	32.7	16.9	15.8	▼1	▼13.3
이동면	25	65.9	43.0	22.9	25	57.1	21.5	35.6	-	▼8.8
상주면	10	21.6	3.6	18.0	11	21.4	1.3	20.1	▼1	▼0.2
삼동면	20	72.8	36.6	36.2	19	50.9	18.4	32.5	▼1	▼21.9
미조면	10	21.2	8.4	12.8	10	17.0	5.3	11.7	-	▼4.2
남면	26	69.6	16.4	53.2	26	61.1	5.1	56.0	-	▼8.5
서면	21	69.5	42.8	26.7	20	57.1	9.0	48.1	▼1	▼12.4
고현면	19	35.8	21.2	14.6	20	36.9	15.6	21.3	▲1	▲1.1
설천면	16	48.7	29.1	19.6	18	49.5	19.7	29.8	▲2	▲0.8
창선면	23	55.7	16.0	39.7	23	52.8	11.4	41.4	-	▼2.9

2.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가. 공람기간 : 2020년 03월 13일 ~ 2020년 04월 13일(20일 이상 40일 이내, 22일간)
- 나. 공람장소 : 남해군 건설교통과
- 다.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일정	시간	장소
2020.03.31	16시 00분	남해군청 대회의실

※ 주민설명회 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이 계속될 경우 주민설명회 참석은 지양하시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또는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남해군 건설교통과
- 나.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의 서식을 이용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제출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우52425)

4. 공람장소 비치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식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67호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판단기준,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이의신청,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23, 팩스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860-3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치)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를 위한 조치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급수설비
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 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을 갖추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결정기한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한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협약·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협약·처분으로 본다.

[별표]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한도 (제6조 제1항 관련)

구경 \ 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수도시설 횡단
D=500mm 이상	50cm 이상	5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50cm 이상
D=500mm 이하	30cm 이상	3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30cm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5조 제3항 관련)

남해군 ○○읍(면) ○○리(동) ○○번지의 ○○필지상의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남해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인 ○○사업 ○○○(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단위사업비 부담금(천원)	단위사업비(천원/톤)	수돗물사용량(톤/일)	비고

3. 추가사업비

추가사업비(천원)	사업위치	사업량	비고(관종 등)

4.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득하여 “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이며, 급수전 인입공사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갑”에게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분	납부금액	비율(%)	납부시기	납부기한
합계				
1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고지일로부터 30일
2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고지일로부터 30일
3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고지일로부터 30일
4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단 용수공급개시이전)	고지일로부터 30일

제5조(부담금의 정산)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갑”의 자산으로 귀속하며, “갑”이 운영·관리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을”이 “갑”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②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갑”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성 명 : 남 해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별지 제2호 서식]

파손원인자 확인서 (제5조 제4항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D= mm()부분을 년 월 일 시에서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 발생 시간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구 경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0 - 368 호

공인 등록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1. 사용 개시일: 2020. 3. 9.
2. 사유: 조례에 따른 조직기금의 운용 및 민원전용 인증기 신조
3. 등록 공인명 · 인영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옥외 광고발전기 금운용관인	2.1cm 정사각형	등록		도시건축과
남해군옥외 광고발전기 금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도시건축과
서면장인 민원사무 전용	2.0cm 정사각형	등록		서면

끝.

남해군 공고 제2020 - 37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 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일체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
- 그 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 있는 조문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표준안) 에 따라 개정, 복무의 통일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고 당연 적용되는 조항 삭제
- 나. 조례상 ‘삭제’ 로 남아있는 조항 정리
-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에 따른 조항 정비
- 마. 오래된 문구 및 오타 등내용 정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22, 팩스 055-860-3737 이메일 euro898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후생팀(전화 055-860-3122)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4와 같다.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외의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휴가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20일	
자녀군입영휴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 영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 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영 제7조 및 제7조 의10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 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	5일 이내	
포상휴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 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일 이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 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비고

1.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불가하다.
2. 영 제7조의 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7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19.4.16.)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그간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조문 정비
 -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명문화
- 나. 여비 부당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징수 규정 신설
 -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 다.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근거 마련
- 라.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 마. 오래된 문구 및 오타 등 내용 정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22, 팩스 055-860-3737, 이메일 euro898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후생팀(전화 055-860-3122)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으로, “ 「공무원임용령」 ”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37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등 수당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에 해당
-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안 제4조)
- 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별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22, 팩스 055-860-3737
이메일 euro898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후생팀(전화 055-860-3122)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업무등의 수당)” 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을 “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으로, “의료업무 등” 을 “의료업무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 전문직공무원” 을 “일반 임기제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4조 중 “제7호” 를 “제8호”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역등급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 등급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 급 이 상	월 82,000원 이하
	6 급 및 7 급	월 65,000원 이하
	8 급 이 하	월 40,000원 이하

[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이하

[별표 7]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근무연수별	지 급 액
1년 미만	월 260,000원 이하
1년 이상	월 500,000원 이하

신·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tr> <td>지역등급</td> <td>전 문 의</td> <td>일 반 의</td> </tr> <tr> <td>병 지</td> <td>월 791,000원 이하</td> <td>월 710,000원 이하</td> </tr> </table> <p>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p>			지역등급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p>[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tr> <td>지역등급</td> <td>전 문 의</td> <td>일 반 의</td> </tr> <tr> <td>병 지</td> <td>월 791,000원 이하</td> <td>월 710,000원 이하</td> </tr> </table> <p>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p>			지역등급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지역등급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지역등급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p>[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tr> <th>등급별 근무연수별</th> <th>가 급</th> <th>나 급</th> </tr> <tr> <td>5년 이상</td> <td>월 1,012,000원 이하</td> <td>월 673,000원 이하</td> </tr> <tr> <td>4년 이상</td> <td>월 1,006,000원 이하</td> <td>월 667,000원 이하</td> </tr> <tr> <td>3년 이상</td> <td>월 1,000,000원 이하</td> <td>월 661,000원 이하</td> </tr> <tr> <td>2년 이상</td> <td>월 995,000원 이하</td> <td>월 656,000원 이하</td> </tr> <tr> <td>2년 미만</td> <td>월 989,000원 이하</td> <td>월 650,000원 이하</td> </tr> </table> <p>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p>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p>[별표 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tr> <th>등급별 근무연수별</th> <th>가 급</th> <th>나 급</th> </tr> <tr> <td>5년 이상</td> <td>월 1,012,000원 이하</td> <td>월 673,000원 이하</td> </tr> <tr> <td>4년 이상</td> <td>월 1,006,000원 이하</td> <td>월 667,000원 이하</td> </tr> <tr> <td>3년 이상</td> <td>월 1,000,000원 이하</td> <td>월 661,000원 이하</td> </tr> <tr> <td>2년 이상</td> <td>월 995,000원 이하</td> <td>월 656,000원 이하</td> </tr> <tr> <td>2년 미만</td> <td>월 989,000원 이하</td> <td>월 650,000원 이하</td> </tr> </table> <p>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p>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p>[별표 3]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tr> <th>직 급 별</th> <th>지 급 액</th> </tr> <tr> <td rowspan="5">일반직 공무원</td> <td>의 사</td> <td>월 1,012,000원 이하</td> </tr> <tr> <td>간 호 사</td> <td>월 65,000원 이하</td> </tr> <tr> <td>5급 이상</td> <td>월 82,000원 이하</td> </tr> <tr> <td>6급 및 7급</td> <td>월 65,000원 이하</td> </tr> <tr> <td>8급 이하</td> <td>월 40,000원 이하</td> </tr> <tr> <td rowspan="3">기능직 공무원</td> <td>7 등급 이상</td> <td>월 50,000원 이하</td> </tr> <tr> <td>8등급 및 9등급</td> <td>월 30,000원 이하</td> </tr> <tr> <td>10등급</td> <td>월 21,000원 이하</td> </tr> </table>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급 이상	월 82,000원 이하	6급 및 7급	월 65,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기능직 공무원	7 등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8등급 및 9등급	월 30,000원 이하	10등급	월 21,000원 이하	<p>[별표 3]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tr> <th>직 급 별</th> <th>지 급 액</th> </tr> <tr> <td rowspan="5">일반직 공무원</td> <td>의 사</td> <td>월 1,012,000원 이하</td> </tr> <tr> <td>간 호 사</td> <td>월 65,000원 이하</td> </tr> <tr> <td>5급 이상</td> <td>월 82,000원 이하</td> </tr> <tr> <td>6급 및 7급</td> <td>월 65,000원 이하</td> </tr> <tr> <td>8급 이하</td> <td>월 40,000원 이하</td> </tr> </table>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급 이상	월 82,000원 이하	6급 및 7급	월 65,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급 이상	월 82,000원 이하																																							
	6급 및 7급	월 65,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기능직 공무원	7 등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8등급 및 9등급	월 30,000원 이하																																							
	10등급	월 21,000원 이하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급 이상	월 82,000원 이하																																							
	6급 및 7급	월 65,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현행	개정안								
<p>[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67 481 783 638"> <thead> <tr> <th>지급대상</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td> <td>월 25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이하	<p>[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05 481 1428 638"> <thead> <tr> <th>지급대상</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td> <td>월 25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이하								
<p>[별표 7](신설)</p>	<p>[별표 7] 7.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5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05 801 1428 1010"> <thead> <tr> <th>근무연수별</th> <th>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월 260,000원 이하</td> </tr> <tr> <td>1년 이상</td> <td>월 50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근무연수별	지 급 액	1년 미만	월 260,000원 이하	1년 이상	월 500,000원 이하		
근무연수별	지 급 액								
1년 미만	월 260,000원 이하								
1년 이상	월 500,000원 이하								

남해군 공고 제2020 - 378 호

공인 등록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 1. 사용 개시일: 2020. 3. 16.
- 2. 등 록 사 유: 조례에 따른 조직기금의 운용
- 3. 등록 공인명 . 인영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 관인	2.1cm 정사각형	등록		환경녹지과
남해군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출납 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환경녹지과

끝.

남해군 공고 제2020-380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연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00306호	마을어업	기타해면 패류/바지 락류	고현면 이어지선	960,000	2020. 3. 15 ~ 2030. 3. 14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어어촌계	2020. 3. 13	재개 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00082호	마을어업	기타해면 패류/바지 락류	고현면 이어지선	960,000	2020.03. 15 ~ 2030.03. 14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어어촌계	

남해군 공고 제2020 - 390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경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등 경남도와 시군 간 사업연계성 강화를 위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 체계
- 명칭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변경
- 급식지원센터장은 직영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급식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유통지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31, 팩스 055-860-3982
이메일 kimjh6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유통지원과 먹거리순환팀(전화 055-860-39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호, 제13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호,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각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급식지원센터장은 직영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급식관리책임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공공급식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 지원</p> <p>5. · 6.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 --</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p>	<p>제4조(설치 및 기능) ----- ----- ----- ----- -----.</p>
<p>1. <u>공공급식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2. ~ 8. (생 략)</p> <p>제13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1.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 ----</p> <p>2. ~ 8. (현행과 같음)</p> <p>제13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 략)
- 4.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 9. (생 략)

③ (생 략)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생 략)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되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16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남해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 7. (생 략)

제21조(학교급식의 지원결정 등) ① (생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4.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제18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

-----.

- 1.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 ~ 7. (현행과 같음)

제21조(학교급식의 지원결정 등) ① (현행

<p>략)</p> <p>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대상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u>공공급식지원센터</u>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과 같음)</p> <p>② ----- ----- ----- -----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은 식자재를 <u>공공급식지원센터</u>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지역농산물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지원금을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2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① ----- -----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 ----- -----.</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u></p>	<p><u>제5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u></p>
<p>제24조(<u>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u>)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 관리할 수 있도록 <u>공공급식지원센터</u>(이하 “<u>급식지원센터</u>”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p>	<p>제24조(<u>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u>) ① --- ----- -----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 -----.</p>
<p>② ~ ⑥ (생 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u>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u>) ① · ② (생 략)</p>	<p>제25조(<u>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u>급식지원센터장은 직영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u></p>
<p>③ · ④ (생 략)</p>	<p><u>급식관리책임자가 된다.</u></p>
<p>③ · ④ (생 략)</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 - 391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급식 지원 목적, 정의, 지원절차, 보조금의 정산 (제1조 ~ 제4조)
-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
-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제6조 ~ 제7조)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수당 (제8조 ~ 제9조)
- 공급자 선정, 의무, 지정 취소 (제10조 ~ 제12조)
- 배송자 선정, 의무, 지정 취소 (제13조 ~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유통지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31, 팩스 055-860-3982
이메일 kimjh6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유통지원과 먹거리순환팀(전화 055-860-39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급식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급식업무 담당과장과 수산업무 담당팀장, 축산업무 담당팀장,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보건급식담당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 유통안전성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초등 1명, 중·고등학교 1명)
2.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초·중·고등학교 각 1명)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급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급식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자 선정 등)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을 위해 남해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⑤ 선정된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역 농산물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공급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붙여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급식지원센터장이 품목 제조보고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급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급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송자 선정 등)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보며,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급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배송자의 지정 취소 등) 배송자의 지정 취소·정지의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 는 “배송자” 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400호

동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남해군 남해읍 일원 “동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7.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사업의 명칭 등

사업의 명칭	하천명 (등급)	사업예정지	목 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동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동산천 (지방하천)	남해군 남해읍 일원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 1.5km	2020년 ~2022년

2. 관계서류 열람기간 : 2020. 03. 17~ 2020. 03. 31.(14일간)

3.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방법

- 가.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
- 나.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동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군	면	리			현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8-2	답	175	56			남해군
2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8-1	답	996	4		선소리6	이*식
3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52	천	17,582	2,219			국(농림축산식품부)
4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7-1	답	1,435	16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54 101동102호(현대아파트)	유*갑
5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6	답	2,396	159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205-37	배*한
6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5	답	2,000	198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205-37	배*한
7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4-1	답	1,070	228		남해군남해읍선소리217	이*심
8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93-3	답	1,446	180		평현리795-2	정*석
9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93-2	답	783	335		북변동290	이*녀
10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90-1	도	2,051	47			국(농림축산식품부)
11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92-1	답	1,520	254		경상남도창원시팔용동125 원풍벽산아파트302-501	박*석
12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92	답	1,941	274		차산리514	이*주
13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96	답	2,381	151		차산리491-1	박*평
14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97	답	255	170		차산리509	조*모
15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98	구	1,735	26			국(농림축산식품부)
16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99	답	1,111	388		차산리524	최*환
17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02	답	887	56		차산리524	김*심
18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02-1	답	29	3		차산리524	김*심
19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03	답	445	47			남해군
20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98	구	1,735	198			국(농림축산식품부)
21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08-1	잡	274	222			남해군
22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08	답	211	12		부산광역시연제구과정로343번길4 3103동2303호(연산동연산자이아파트)	고*렬
23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09-1	잡	160	162			남해군
24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09	답	1,756	74		서울용산구용산동2가32-3	정*규
25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14-3	잡	215	187			남해군
26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14	답	1,571	6		남해군남해읍심천리522	장*준
27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15	답	975	77		남해군남해읍심천리522	장*준
28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315-1	잡	181	164			남해군

남 해 군 공 보

(94) 제 659 호

2020년 3월 19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군	면	리			현공부	편입		주소	성명
29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433-1	잡	279	242			남해군
30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433	답	1,740	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38주 1동606호(우동해운대아이파크)	이*균
31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89-9	도	170	105			남해군
32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89	대	979	2			남해군
33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89	천	979	35			남해군
34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417	천	590	4			국(국토교통부)
35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89	대	979	3			남해군
36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34	잡	255	1		북변리586	김*수
37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4	잡	352	89		북변리586	김*수
38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3	전	59	18		1,417	이*례
39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	천	51,709	193			국(기획재정부)
40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5	전	18	20			남해군
4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1	전	631	119		북변리300-27	김*선
42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7	답	701	41			국(기획재정부)
43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87	구	913	23			국(농림축산식품부)
44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406	답	1,232	362		491-1	박*기
45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5-2	구	1,629	489			국(농림축산식품부)
46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98-2	답	922	113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47길 69-18305호 (암사동효정하나플러스)	유*선
47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98-1	답	1,732	136		서울시양평구목동727-28	정*만
48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98	답	2,207	142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선소로75번길 78-1	문*욱
49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86	답	797	3		537	박*주
50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85	답	1,654	10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선소로75번길 92-16	엄*기
51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9-3	답	1,093	15		440	문*중
52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9-1	답	1,526	7		남해군서면남상리1163-1	신*
53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9	답	1,250	7		남해군서면남상리1163-1	신*
54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453	천	16,855	2,495			국(농림축산식품부)
55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1-3	답	1,823	5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암로161-8 (대방동)	주*은
56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1-9	답	137	8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암로161-8 (대방동)	주*은
57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1-2	답	580	35		경상남도거제시신현읍상동리479 삼성명가타운103-1004	정*식
58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1-1	답	884	73		경상남도거제시신현읍상동리479 삼성명가타운103-1004	정*식

용 지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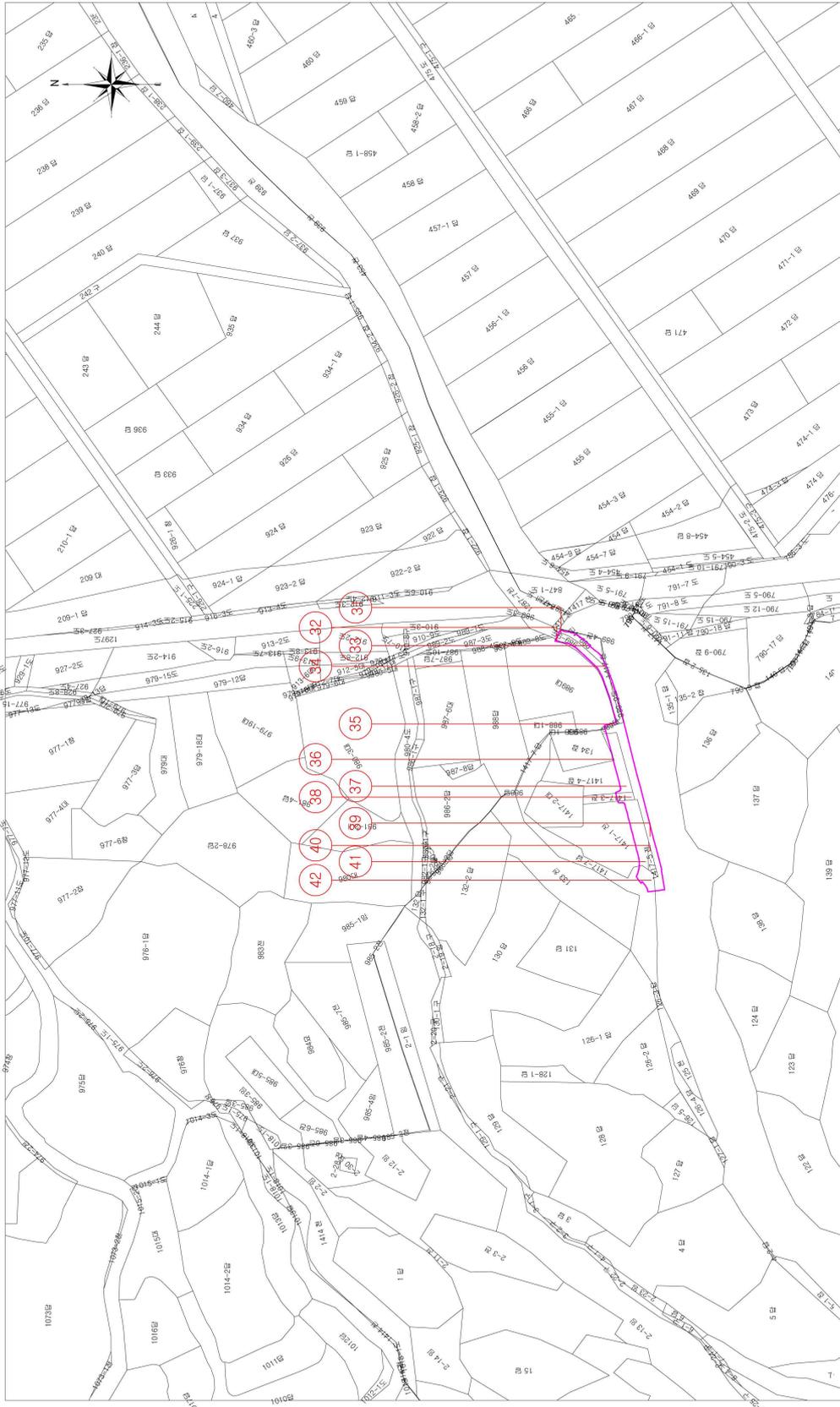
동신지구 하천제해예방사업



 경 상 부 도 (주)이산 수생엔지니어링	사 임 명 시 설 / 공 구 건설분야	동신지구 하천제해예방사업 - 신시설계	개 정 내 용 2020.03 설계	이 필 반 조 정 진 장 분 재	위 서 정 보 축 축	도 면 명 용 지도 (2/3)
	개 정 내 용 2020.03 설계	이 필 반 조 정 진 장 분 재	위 서 정 보 축 축	도 면 명 용 지도 (2/3)	도 면 명 용 지도 (2/3)	도 면 명 용 지도 (2/3)

용 지도 (3/3)

동산지구 하천제해예방사업



 (주)이산 수생연지아름	사업명 동산지구 하천제해예방사업	2020.03	개장번호 -	개장내용 -	이관관 과의태원/사	조성진 부의태원/사	장원제 부의태원/사	위치정보 축적 도면번호	도면명 판철번호	용지도(3/3)
	시정/군구 간성읍/아	토목	간성단개	실시일계	날짜	2020.03	개장번호 -	개장내용 -	위치정보 축적 도면번호	도면명 판철번호

남해군 공고 제2020 - 407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2. 제정이유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의 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사업 범위,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5조)
- 나. 추진단 설치, 조직 구성, 업무, 운영, 추진단의 의무(안 제6조~제10조)
- 다. 사업비의 환수, 지도·감독(안 제11조~제12조)
- 라.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임기(안 제13조~제17조)
- 마. 위원의 해임·해촉, 운영규정(안 제18조~제19조)
- 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4월 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이메일 simbo6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 농산물 연구 인프라 구축, 특산물 및 마늘·한우 축제 활성화, 남해 농축산 종사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추진단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장은 민간추진위원장 또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중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업무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근직원 인건비는 전액 지원한다.

④ 추진단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 간접보조사업자와 기금납입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 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추진단장 선임
6. 그 밖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사업비의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기관의 장
3. 업무 관련 공무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장)
4.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